

제31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2025. 2. 26.(수)



행정복지위원회

# 목 차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능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안 .....	1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	3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5. 달성군 어린이집 영어교사 전담배치사업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	9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12
7. 2025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5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9.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능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안

##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617호
- 제출일: 2025년 2월 3일
- 제출자: 박주용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5년 2월 13일
- 상정 및 의결: 제31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025.02.20.)

## 2. 제안사유

- 자원봉사의 일환인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의 발전과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기본이념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재능기부의 정의 및 유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재능기부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 비용추계서 : 비대상

##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을 대가 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재능기부를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공동체 발전과 달성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재능기부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개인의 이익과 기술개발에만 활용하지 않고, 사회에 기여하는 새로운 기부형태를 뜻합니다. 또한 이는 일반적인 봉사활동이 아닌 전문적인 봉사활동에 해당합니다.
- 2025년 2월 기준, 대구 관내 ‘재능기부’ 관련 제명의 조례를 시행 중인 곳은 남구, 달서구, 북구 등입니다.
- 조문 내용상 재능기부의 정의를 법률, 의료, 문화예술체육, 전문기술, 사회복지 및 그 밖의 사회서비스 분야를 말하고 있습니다. 작년 군민들의 분야별 봉사활동 현황은 15이상의 분야에 61,860건으로 상세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단위: 명)

계	생활편의	주거환경	상담	교육	보건의료	농어촌	문화행사	환경보호
61,860	10,763	163	1,730	3,539	128	465	8,497	2,847
	행정보조	안전방법	인권공익	재해재난응급	국제협력	멘토링	기타	
	2,643	11,432	0	14	190	395	19,054	

- 본 조례안은 세분화 된 분야별 봉사활동을 유목화하는 점, 다양한 전문가들의 재능기부를 장려하여 사회에 환원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의 공동체 발전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의식함양을 제고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 6.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618호
- 제출일: 2025년 2월 3일
- 제출자: 이연숙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5년 2월 13일
- 상정 및 의결: 제31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025.02.20.)

## 2. 제안사유

- 최근 아동 유괴 등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아동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아동보호에 대한 책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제5조)
- 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유지·관리 및 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7~제8조)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같은 법 시행령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최근 아동 유괴 등의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규정한 내용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 아동보호구역은 「아동복지법」 제32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동보호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혼동할 수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되는 것으로 아동보호구역과 구분될 필요가 있습니다.
-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은 현재 임의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맡기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2023년 배현진의원 대표발의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아동보호구역에 대한 강행규정을 추진하려 했으나 계류된 바 있습니다. 2023년 당시 10개 지역(대구 포함)에서 아동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았으나 최근 대구 관내 서구, 남구, 달서구 등에서 아동보호구역 지정 움직임이 확산됨에 따라 아동의 위험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 본 조례안 검토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 ① 아동보호구역 지정 범위 및 기준
  - ② 관할 경찰서와의 협의여부
  - ③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시설물 설치 기준
- 행정안전부에서는 “생활안전지도”를 통해 다양한 위험 및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등 ‘어린이대상범죄주의구간’도 안내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기를 바라며,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 6.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619호
- 제출일: 2025년 2월 3일
- 제출자: 최재규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5년 2월 13일
- 상정 및 의결: 제31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025.02.20.)

## 2. 제안사유

- 「청소년 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지도위원의 자격 등을 정비하였으며, 청소년 관련 기본 조례로 역할하도록 함으로서 달성군 청소년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총칙(정의·책임·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1장)
- 청소년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2장)
- 청소년육성위원회·참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장~제4장)
- 청소년지도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장)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달성군의 청소년 정책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 현재 달성군 조례중 청소년과 관련된 제명을 가진 조례는 총 10개로 확인됩니다.

순번	제명(대구광역시 달성군)	순번	제명(대구광역시 달성군)
1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6	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7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조례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8	소아·청소년 당뇨등 인식개선 지원 조례
4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9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지원에 관한 조례
5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10	아동·청소년 부모 빗 대물림 방지지원 조례

- 이중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조례는 본 조례로 판단됩니다. 다만, 2015년 이후 실질적 개정사항은 확인되지 않으며 그 기간 상위법은 다양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 기존 조례와 상위법령이 상충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법상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심의기능을 수행하나, 조례상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자문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점
  - ② 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이 명시되어 있으나 조례상 명시되지 않는 점
  - ③ 법상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보다 조례상 결격사유가 축소되어 있는점
- 따라서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상황을 반영하고, 확대되는 청소년 정책의 통일성을 위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 6.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625호
- 제 출 일: 2025년 2월 4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5년 2월 13일
- 상정 및 의결: 제31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2025.02.21.)

## 2. 제안사유

- 청년들의 창업 활동과 성장 및 능력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청년혁신센터를 활성화하여 청년들의 교류와 참여를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청년활동 지원범위 확대(안 제1조)
- 청년혁신센터 정의 및 설치 범위 확대(안 제2조~제3조)
- 청년혁신센터 기능의 확대(안 제4조)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청년기본법」

##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로서 청년의 책무를 다하고 청년정책을 수립·조정하기 위해서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들의 창업 활동과 성장 및 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 「청년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에 대한 정책을 수립·조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같은 법 제4장에서는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으로 고용, 일자리 질 향상, 창업, 능력개발, 주거, 복지, 금융생활, 문화활동, 국제협력 등 다양한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2022년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창업활동 지원 및 창업생태계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이에 2023년 4월 달성청년혁신센터가 개소된 바 있습니다.
- 다만, 본 조례의 목적상 청년의 창업에 국한된 규정은 달성청년혁신센터가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진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으며 본 조례안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창업 및 ▲성장, ▲능력 개발 등을 추가하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함임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6.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달성군 어린이집 영어교사 전담배치사업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626호
- 제 출 일: 2025년 2월 4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5년 2월 13일
- 상정 및 의결: 제31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2025.02.21.)

## 2. 제안사유

- 글로벌 시대에 발맞추어 자라나는 영유아들에게 외국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친근감을 심어주고 다양한 경험을 통한 유능한 인재로 육성하기 위하여 「영유아법」 제4조(책임)에 따라 영어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기관을 선정 후 영어학습 관련 사업을 전담 위탁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달성군 어린이집 영어교사 전담배치 사업
- 나. 사업대상: 2025년도 사업을 신청한 163개소 어린이집
- 다. 사업기간 : 2025. 3. 17. ~ 2025. 12. 19. / 40주간 실시
- 라. 참여인원 : 3,833명(2세 이상 영유아 대상)
- 마. 사 업 비 : 1,450백만원(전액 군비)
- 바. 위탁사무 : 주2회 ~ 3회 영어 선생님의 어린이집 방문수업 일체

사. 시행방법 : 달성군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영어전문기관 위탁

아. 선정방식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자.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1) 모집공고 : 2024. 11. 22. ~ 12. 6.
- 2) 신청접수 : 2024. 12. 5. ~ 12. 6.
- 3)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 2024. 12. 9.
- 4)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의회 동의 : 2025. 2.
- 5) 사업계획 수립 및 위·수탁 협약 체결 : 2025. 2.
- 6) 사업진행 : 2025. 3. 17. ~

○ 위탁대상 어린이집 현황

구분	1 권역	2 권역	3 권역	합계
해당 읍·면	화원, 옥포, 가창	다사, 하빈	논공, 유가, 현풍, 구지	
어린이집 개소	38개소	63개소	62개소	163개소
수업 아동수	827명	1,321명	1,685명	3,833명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 2024년 영어교사 전담배치사업 추진결과 분석보고 자료

○ 2025년 사업비 산출근거

가. 1주간 달성군 어린이집 영어수업 방문수업 횟수 : 818회

나. 사업 기간 : 40주

다. 1회 수업료(직접 강의료 및 교재교구비 포함) : 44,200원

라. 산출기초 : 818회 x 40주 x 44,200원 = 1,446,224,000원

※ 2024년 영어교사 전담배치사업 1회 수업료 : 44,200원

##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민간재위탁 동의안은 “달성군 어린이집 영어교사 전담배치사업”의 동의를 의회에 언고자 함입니다.
- 본 사업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민간위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2023년 시행된 본 사업은 작년(2024년) 관내 3개의 권역에 각각 3곳의 시행기관(1권역:대구동심, 2권역: 에듀플러스, 3권역:웅진에듀)이 선정되어 진행한 바 있습니다.
- 현 민간위탁을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관하여 직접고용을 할 경우 사업환경변화(신규인가, 폐원 등)에 대한 능동적 대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 검토사항과 더불어 본 사업의 취지인 관내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모든 어린이집을 지정하여 규모의 경제효과를 활용한 민간위탁 사무방식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 달성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기존 시행기관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모두 기존 권역을 희망하고 있는바, ①서비스 공급 공공성 및 안정성, ②경제적 효율성, ③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④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았을 때 민간재위탁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 6.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627호
- 제 출 일: 2025년 2월 4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4년 2월 13일
- 상정 및 의결: 제31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2025.02.21.)

## 2. 제안사유

-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민간위탁 중인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동의를 의회에 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위탁대상 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시설 규모	종사자수	비고
달성군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현풍읍 테크노중앙대로 231 (달성교육문화복지센터 3F)	전용면적 : 385.9㎡	12명	

### 나. 위탁대상 사무의 범위 및 내용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청소년안전망 운영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 청소년동반자 운영 : 고위기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1:1 상담 운영
- 지역 특화 및 외부 공모 사업 운영

#### 다. 조직 및 구성

구분	계	센터장	팀장	팀원	청소년동반자
인원	12	1	1	3	전일제 2 시간제 5

라. 위탁기간 : 2025. 3. 21 ~ 2030. 3. 20. (5년)

마. 수탁기관 선정방식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평가

#### 4. 민간위탁 재계약 경위

○ 2024. 11. 12. : 민간위탁 재계약 신청 접수

※ 신청기관 :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 2024. 11. 14. ~ 20.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 심의결과 : 평균 86점으로 재계약 적정 의결 (평균 70점 이상 시 적격)

○ 향후일정

- 2025. 2. : 의회 동의

- 2025. 3. : 재계약체결(위탁기간 : 2025 3. 21 ~ 2030. 3. 20.)

- 2025. 3. : 공보 게재

####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기간 (2022. 3. 21 ~ 2025. 3. 20.)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과 위탁운영 재계약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로서 ①상담 사업, ②상담 자원봉사자 육성 및 역량강화, ③지역특화사업(다문화 힐링캠프, 이중언어 동아리 등), ④위기청소년발굴지원사업, ⑤외부공모사업 등과 같은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은 군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8년 설립되었으며, 2016년 처음 수탁기간으로 선정된 이후, 총 9년간 2회 재계약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2025. 3. 20.)하였으며 현 수탁기관인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이 재계약 의사 표시를 해 오음에 따라,
- 현 수탁기관을 달성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재계약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 결과, 86점(평균 70점 이상이면 재계약 가능)으로 적극적으로 의결되었고 기존 네트워크를 활용한 안정적인 운영 및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사회복지서비스 성격의 행정재산임을 고려할 때, 민간의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 6.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2025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628호
- 제 출 일: 2025년 2월 4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5년 2월 13일
- 상정 및 의결: 제31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2025.02.24.)

## 2. 제안사유

- 옥포읍 교항리 마을공영주차장 조성
  - 옥포읍 교항리 1516-1번지 일대는 주택 밀집지역으로, 마을 내 주·정차 차량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민 불편을 초래함
  - 마을 주민들의 주차장 신설 건의에 따라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건물 철거 후 노외주차장 조성을 통해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을 줄이고 도로통행을 원활케 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 현풍읍 부리 마을공영주차장 조성
  - 현풍읍 부리 397-2번지 일대는 주택 및 상권 밀집지역으로, 통행 차량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함
  - 마을 주민들의 주차장 신설 건의에 따라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건물 철거 후 노외주차장을 조성,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을 줄이고 도로통행을 원활케 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 환경공무직 휴게시설 및 청소차량 차고지 신축

- 환경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휴게시설은 공간이 협소하고 탈의실 및 개인 사물함도 구비되지 않은 등 시설이 열악함
- 음식물 및 생활폐기물 수집 차량은 차고지 없이 노상에 주차되어 악취 발생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휴게시설과 차고지를 신축하여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환경 공무직의 휴게환경을 개선하여 근무효율을 증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옥포읍 교항리 마을공영주차장 조성

- 위치 : 옥포읍 교항리 1516-1, 1524-5, 1517-4번지
- 기간 : 2025. 1. ~ 2025. 12.
- 면적 : 부지면적 1,410㎡
- 주요시설 : 노외주차장 1개소(주차면수 42면 정도)
- 총사업비 : 19.9억원 정도
  - 부지매입비 15.7억(1524-5, 1517-4번지는 공유지), 공사비 4.2억

※기준가격

- 토지(공시지가 × 면적) : 693,903,000원
- 건물(시가표준액) : 91,868,000원

- 추진상황

- 2024. 7. : 읍면별 마을공영주차장 대상지 수요조사
- 2024. 8. ~ 9. : 마을공영주차장 신청지 현장조사
- 2024. 10. : 마을공영주차장 사업대상지 선정

- 향후 추진계획

- 2025. 1. ~ 3. : 부지매입
- 2025. 3. ~ 5. : 실시설계 용역 및 관계부서 협의
- 2025. 5. ~ 6. : 석면 사전조사 의뢰 및 철거
- 2025. 7. ~ 10. : 건물 철거 및 주차장 조성공사 시행
- 2025. 11. : 지목변경 및 영조물 보험가입

나. 현풍읍 부리 마을공영주차장 조성

- 위 치 : 현풍읍 원교리 397-2, 398번지
- 기 간 : 2025. 1. ~ 2025. 12.
- 면 적 : 부지면적 1,069㎡
- 주요시설 : 노외주차장 1개소(주차면수 32면 정도)
- 총사업비 : 23.2억원 정도
  - 부지매입비 19.7억, 공사비 3.5억

※기준가격

- 토지(공시지가 × 면적) : 1,050,606,900원
- 건물(시가표준액) : 44,656,200원

- 추진상황

- 2024. 7. : 읍면별 마을공영주차장 대상지 수요조사
- 2024. 8. ~ 9. : 마을공영주차장 신청지 현장조사
- 2024. 10. : 마을공영주차장 사업대상지 선정

- 향후 추진계획

- 2025. 1. ~ 3. : 부지매입
- 2025. 3. ~ 5. : 실시설계 용역 및 관계부서 협의
- 2025. 5. ~ 6. : 석면 사전조사 의뢰 및 철거
- 2025. 7. ~ 10. : 건물 철거 및 주차장 조성공사 시행
- 2025. 11. : 지목변경 및 영조물 보험가입

다. 환경공무직 휴게시설 및 청소차량 차고지 신축

- 위 치 : 논공읍 금포리 1303번지
- 기 간 : 2025. 2. ~ 2025. 9.
- 규 모 : 부지면적 1,653㎡, 연면적 385.4㎡(지상2층)
- 주요시설
  - 1층 : 음식물 및 생활폐기물 수집차량 차고지, 창고 등
  - 2층 : 락커룸, 샤워장, 사무실 등 휴게시설
- 총사업비 : 10억원 정도
  - 공사비 9억, 설계비 0.4억, 감리비 0.9억

※ 기준가격(대장가격)

- 건물 신축(사업비) : 1,067,538,200원

- 추진상황

· 2024. 9. : 사업계획 수립

- 향후 추진계획

· 2025. 2. ~ 4. : 실시설계 용역 시행

· 2025. 5. :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 이행

· 2025. 7. ~ 9. : 공사 착공 및 준공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2025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수시분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 옥포읍 교항리 마을공영주차장 조성건은 해당 마을의 만성적 주차난을 해소하여 주민들의 편의증진을 기여하고자 함이며, 부지면적 1,337㎡, 건물 연면적 391.75㎡로 부지매입비 15.7억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19.9억입니다.
- 현풍읍 부리 마을공영주차장 조성건은 해당 마을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함으로 부지면적 1,069㎡, 건물 연면적 554.1㎡로 부지매입비 19.7억을 포함한 총사업비 23.2억입니다.

- 환경공무직 휴게시설 및 청소차량 차고지 신축건은 협소하고 열악한 환경공무직 휴게시설을 개선하고 음식물 및 생활폐기물 수집 차량에서 발생하는 악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함이며, 연면적 385.4㎡ 규모의 공사비 9억을 포함한 총사업비 10억원 정도입니다.
- 이를 위해 3건의 토지 및 2건의 건물을 매입하여 약 19억원, 1개의 건물을 신축하여 약 11억원으로 총 30억원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였으며 2건의 건물을 철거하여 약 1.3억원의 공유재산을 처분하였습니다.
- 본 계획안은 달성군 공무직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 마을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서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6.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629호
- 제 출 일: 2025년 2월 4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5년 2월 13일
- 상정 및 의결: 제31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2025.02.24.)

## 2. 제안사유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7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운영 필요성이 낮은 정보화추진위원회를 폐지하여 정보화분야에 대한 책임행정을 강화

## 3. 주요내용

-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내용정비(안 제4조, 제5조, 제8조)
- 정보화추진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안 제6조~제7조)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른 내용정비 및 운영 필요성이 낮은 정보화추진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 상위법령에 따른 내용정비 관련입니다. 본 조례는 1999년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정보화추진 조례」로 제정되어 제4조에서 지역정보화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관련 상위법령은 「정보화촉진기본법」(현: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1996년 제정되었으며, 제5조 “정부는 정보화촉진등을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후 2009년 8월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7조에서는 시행계획 수립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2020년 12월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제6조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것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전부개정 되어 이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정보화추진위원회는 폐지 관련입니다. 현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 통·폐합 등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정보화추진위원회는 단순 자문기구로써 운영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 판단됩니다.

## 6.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630호
- 제 출 일: 2025년 2월 4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4년 2월 13일
- 상정 및 의결: 제31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2025.02.24.)

## 2. 제안사유

- 근거 법령에 적합하게 조례를 개정하여 공인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를 통해 군민들의 알권리를 제고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공인 관련 상위법령 개정으로 법령 명칭 변경 및 현재 공인 운용 체계에 적합하도록 조항 신설 및 정비(안 제2조~제6조)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게 조례를 개정하고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 개정사항은 본 조례 일부개정 시기인 2023년 상위법령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일부개정된 사항을 조례의 조문에 반영하고자 함이며,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3조에 명시되어있는 합의제 기관의 관인 관리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관내 기관의 이해를 돕고자 함입니다.
- 또한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 정비 권고용어 503번 “관수”를 “보관”으로 바꿈에 따라 국민들의 알권리를 제고하는 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 6.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